

신청안내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 (스마트공장 최초 도입)

- ▶ 신청기간 :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(600개사 내외) 소진시까지
- ▶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-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(<http://bms.smart-factory.kr>)
 - *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(수요-공급기업) → 로그인 후 "온라인 사업신청" 화면 → 온라인 신청 (일반템, 공급기업템, 예산템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)
 - ※ (제출서류 양식) 공지사항 게시판 내 첨부파일(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) 다운로드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
2	견적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및 비교견적 2건 (총 3건)
3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생산현장디지털화 (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)

- ▶ 신청기간 :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(200개사 내외) 소진시까지
- ▶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-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<https://it.smplatform.go.kr>)
 - 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 - ※ (제출서류 양식)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공고 페이지 내 첨부파일(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) 다운로드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 1부
2	가격제안서(공급기업 작성) 1부
3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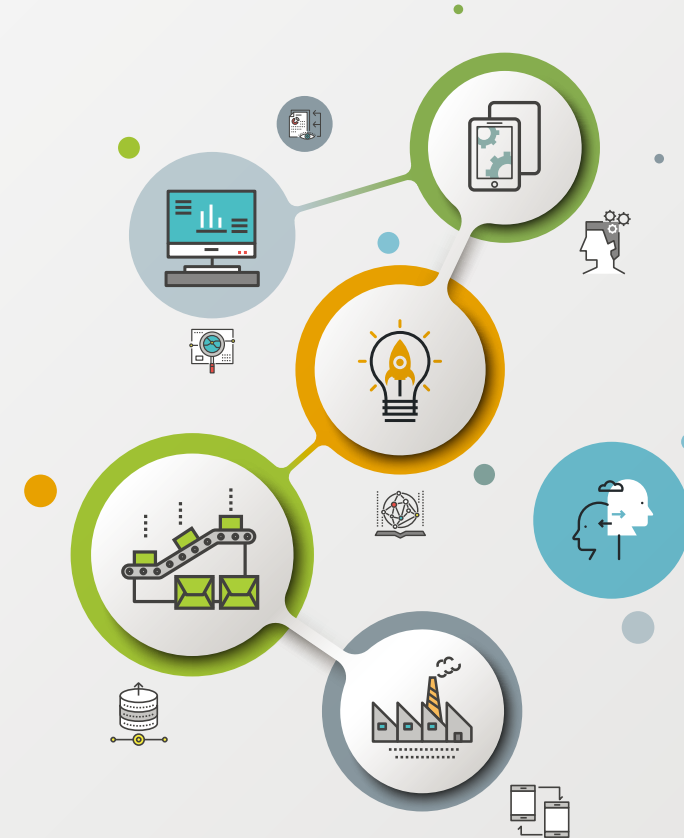
문의처

▶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 싶으시다면?

구분	기관명	연락처
공고내용 문의	중소벤처기업부	국번없이 1357
사업 문의	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	02-6050-2777(일반문의)
	② 생산현장 디지털화	1644-1736(일반문의) 042-388-0757, 0758, 0760

2018년 스마트공장지원사업(추경) 신청 안내

공장을 똑똑하게!
스마트공장지원사업



중소벤처기업부

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SF 스마트공장 추진단

스마트공장 정의와 수준

스마트공장의 정의

▶ ICT,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되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스마트제품을 적시(고객이 요구하는 시점)에 생산하여 적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인공지능형 공장입니다.

스마트공장의 범위

▶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,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하며, 수직적으로는 현장자동화, 제어자동화, 응용 시스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스마트공장 수준의 정의

▶ ICT 활용도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합니다.

수준	개념
기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를 디지털화(전산데이터)하는 수준 : (바코드, RFID 등으로 생산정보 수집 및 파악)별로 생산과정 파악 •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
중간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생산설비, 공정, 자재 및 제품 정보가 실시간 수집·분석되는 수준 : (생산정보를 통한 품질분석 및 생산계획 수립) • 수집·분석한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 실시
중간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집·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여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는 수준 • 분야별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연동, 협력사까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
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oT, CPS 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•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장

스마트공장을 처음 도입하신다면?

KOSF **민생** 스마트공장 추진단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신청!

전담 기관

▶ 스마트공장 추진단 : 02-6050-2777

사업 개요

▶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지원내용

▶ 제품설계·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
솔루션 분야	지원기준
현장자동화/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	·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 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·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(예, MES)과 연결되어야 함
제품개발	·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(예, PLM)
공급사슬 관리 최적화	· 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·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
기업자원 관리	·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(예, ERP) ·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이어야 함

신청자격

▶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
*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참여 가능)

지원조건

※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*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지원 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▶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
-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)
-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유희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기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원하시면

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신청!

전담 기관

▶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042-388-0757, 0758, 0760

사업 개요

▶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

지원내용

- ▶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등
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-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*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 등
- * KIOSK, 센서, 컨트롤러(제어기), 자동화 장비 등
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**를 위한 연계시스템**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- * 제품개발, 수주관리, 자원조달관리, 생산계획관리,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, 물류관리, 재고관리, 고객(공급사슬)관리, 에너지·안전관리, 빅데이터(클라우드) 관리 등
- ** 시스템 예시 : SCM, WMS, 제조ERP, PLM, MES, APS,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

신청자격

▶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
구분	자격조건	
컨소시엄	도입기업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(신청완료일 기준) ·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	공급기업	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·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지원조건

※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최대 1억원,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*
*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% 매칭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매칭

【매칭비율 예시】

총사업비	정부지원금(최대 1억원)	기업부담금
① 1억원	0.5억(50%)	0.5억(50%)
② 2억원	1억원	0.5억(50%)
	1억원(초과분)	0.3억(30%)
소계	0.8억(40%)	1.2억(60%)

지원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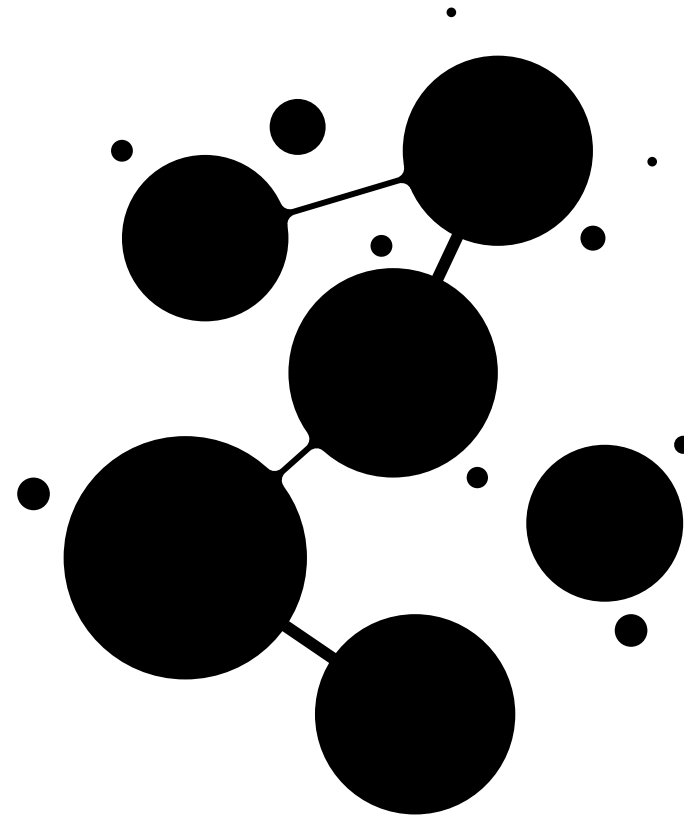
▶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
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【부적격 사항】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
-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유희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2018년 스마트공장지원사업(추경) 신청 안내



 중소기업부

TI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민광 스마트공장 추진단